

의안번호	제 145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9월 일 (제 263 회)

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의 전환·설립을 위한
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7년 월 일

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·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

의안 번호	1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개정 「전자정부법」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·설립하게 됨에 따라
-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 「전자정부법」(‘07. 7. 4일 시행)에서 그간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」에 근거하여 설립·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「전자정부법」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·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○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164조제1항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함.

○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

제50조(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) ①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음

부칙 제3조(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,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

부칙 제4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해 취득하기로 한 재산·시설·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

부칙 제5조(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) 조합의 임·직원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·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봄

나. 첨부

○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기본계획

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기본계획

2007. 6

목 차

I. 설립배경 및 경과

- 1. 개발원 설립배경
- 2. 그간의 경과

II. 조합의 해산

- 1. 기본방향
- 2. 해산절차
- 3. 조치사항

III. 개발원 설립계획

- 1. 개발원의 주요기능
- 2. 설립 기본방향
- 3. 개발원의 기관구조
- 4. 개발원 운영방안
- 5. 설립절차 및 일정
- 6. 조치사항

V. 협조사항

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기본계획

-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법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 설립·운영되었던 『자치정보화조합』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『한국지역정보개발원』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임

I 설립배경 및 경과

1] 개발원 설립배경

1. 기관의 성격을 전자정부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일원화

- 자치정보화조합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설립·운영되어 왔으나 자치단체 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(이한구의원, '05.11월)
-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어 기관의 지위와 안정성이 강화되는 반면,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급변하는 정보화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
- ➔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전문 지원기관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일원화

2.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기반 확보

-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고, 중앙부처 정보화사업 위탁근거 등이 마련되어 기관의 위상과 안정성이 강화
- ➔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사업에 개발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보화 지원사업이 확대

3.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

-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기능의 강화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자원연계 및 공동이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며
-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지원과 위·수탁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

4.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

- 조합이 보유·운영중인 정보자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허브(Hub)로서 기관의 역할 확대
- ➔ 중앙과 지방의 연계체계 운영상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보안 및 재난·재해에 대해서는 진단분석, 컨설팅, 복구지원 등 체계적으로 대응

② 그간의 경과

-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안 : '04. 11. 20
-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: '04. 11 ~ '06. 4
- ※ 개발원 전환 관련 전자정부법 개정안 시도 의견조회('06. 1. 26)
- 조합회의 보고(출연기관으로 법인전환 관련) : '06. 4. 5
- 국무회의 의결 : '06. 6. 13
- 국회 본회의 의결 : '06. 12. 8
- 법 개정안 공포(법률제8171호) : '07. 1. 3
- 개발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: '07. 1. 30
- 개발원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(행자부차관 주제) : '07. 4. 16
- 개발원 설립계획 보고(행자부장관) : '07. 4. 23

II 조합의 해산

1 기본방향

- 시·도의회 조합 해산동의 및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등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조합의 해산절차 이행
- 개발원으로 전환·설립을 위해 조합을 해산함으로 조합 해산은 개발원 설립과 병행하여 추진
- 조합의 권리·의무 및 임·직원 파견공무원 등은 개발원으로 포괄승계

2 해산절차

※ 조합 해산일정은 시·도 의회의 「조합 해산 동의절차 완료」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추후 재조정 예정

(1) 조합회의('07. 6월)

- 조합 해산결의
 - 해 산 일 : 개발원 설립일('07. 10월 예정)
 - 결의내용
 - 시·도 의회 조합 해산동의(안) 상정 및 행자부장관 승인절차 이행
 - 개발원으로 승계될 재산·시설·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·의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산절차 이행
 - 조합 해산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
- 청산인 선임
 - 선임기간 : 조합회의 선임일 ~ 조합 해산 등기일까지
 - 청산인의 임무
 - 조합의 재산·시설·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·의무의 실사결과 확인
 - 조합과 체결한 협약, 계약, 기타 권리의 이해관계자 통보 등
 - 승계대상 재산·시설·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·의무 등의 조합회의 보고

(2) 해산동의 및 승인절차 이행

○ 시·도의회 조합 해산 동의(안) 상정

- 시 기 : '07. 7 ~ 9월
- 안건내용 :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원으로 전환·설립을 위해 조합을 해산

○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요청

- 시 기 : '07. 10월(시·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후)
- 신청서류 : 시·도의회 동의(안) 의결결과를 첨부(공문으로 신청)

(3) 청산 및 권리·의무의 이관

○ 재산 및 채권·채무 실사

- 시 기 : '07. 9월(청산기준일 설정 후 1개월 이내)
- 주요내용
 - 조합이 취득한 유·무형 재산 및 채권·채무 조사
 - 재산 및 채권·채무 등에 대한 이관조서 작성 후 청산인에게 제출

※ 개정 전자정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조합의 모든 권리 의무는 개발원이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하므로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산 등기를 할 수 있음(대법원 회신)
다만, 실사 결과의 대사확인을 통한 승계대상 자산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작업 이행

○ 조합회의(최종회의) : '07. 10월

- 조합의 재산·시설·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·의무의 개발원 이관범위 확정

(4) 조합 해산등기

○ 시 기 : '07. 10월(개발원 설립이후)

○ 구비서류 : 조합 해산 관련 시도의회 동의 및 행자부장관 승인서

3] 조치사항

(1) 해산·청산절차 법률자문

- 자문대상 : 대법원 및 고문변호사
- 자문내용
 -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사항
 -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 등기에 관한사항

(2) 조합 해산결의(안) 및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(안) 등 조합회의상정

- 시 기 : '07. 6월(서면결의)
- 주요내용
 -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절차, 개발원 운영방안 등
 - 조합 해산 동의(안) 시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협조

(3) 시·도의원 및 정보화책임관 워크숍 개최(잠정)

※ 시·도의 의회일정 등을 감안하고 행자부 및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

- 개최시기 : '07. 7 ~ 8월
- 주 관 : 행정자치부와 조합 공동주관
- 주요내용
 - 개발원 전환설립의 필요성 및 현안사항 보고
 - 지역정보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개발원의 발전방안 토론 등

Ⅲ 개발원 설립계획

1 개발원의 주요기능

- 전자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지원
- 지역정보화를 위한 행정기관 위탁사무 수행
-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훈련
- 공동활용 소프트웨어의 개발, 보급 및 유지관리
- 자치단체의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등의 표준화 지원
- 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
-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
-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

2 설립 기본방향

□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지원기관의 역할강화

- 지역정보화를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
- 중앙부처의 지역정보화 관련업무 위·수탁을 위한 대외 경쟁력 강화
- 지역정보화관련 조사·연구 및 컨설팅의 전문성 강화

□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및 기관의 안정성 도모

- 위·수탁 사업비 운영방식 개선 및 사업별 독립채산제 도입
-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 및 사이버교육 확대 등을 통한 자체수입원 개발
- 기초자치단체의 개발원 참여 및 지원을 위한 특별회원제 도입

□ 기관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·발전하는 시스템 구축

- 직렬 통합, 경쟁체제 도입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
- 우수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제 도입
- 성과중심의 기관경영방식 도입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

3] 개발원의 기관구조

- 유사기관 정관의 비교·검토 및 준비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개발원 정관(안)에 반영
- 시·도 의견조회와 행자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안 확정

(1) 임원의 구성

- 개발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구성(원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)
- 이 사 : 시·도 부단체장(행정),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, 원장, 상임이사(1인) 및 외부 선임인사(5인)로 구성(임기3년, 연임가능)
 - 이사장은 기관의 위상강화를 위해 외부 선임이사 중 저명인사를 추대
 - 시·도 및 행자부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
- 감 사 : 임기 2년(연임가능)

(2) 임원의 선임절차

구 분	선 임 절 차
이사장	외부 선임이사 중에서 저명인사를 이사회가 선임
원 장	임원추천위원회 추천(복수) ▶ 이사회 의결 ▶ 행자부장관 임명 ※ 개발원의 초대원장은 전자정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현 조합장이 승계
이사 및 감사	임원추천위원회 추천 ▶ 이사회 선임 ▶ 행자부장관 승인
상임이사	행자부장관 추천 ▶ 이사회 선임

4] 개발원 운영방안

(1) 지역정보화 지원기능 강화

○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

- 전자정부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
- 중앙부처의 정보화업무 중심으로 출연되어온 전자정부지원사업에 개발원이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 정보화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가능

○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회원제 도입

- 폭넓은 자치단체의 참여와 정보화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회원제 도입
- 회비를 납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보화관련 컨설팅 및 감수, 서비스데스크 운영,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지 보급 등을 지원

(2) 경영수지구조 개선

○ 위·수탁업무 수행방식 개선

- 위·수탁사업은 모든 비용이 당해 사업에서 충당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
- 정보화업무 위·수탁 협약 시 일정비율(3~5%)을 위탁관리비로 확보
- 위·수탁 업무 발굴대상 확대(행자부, 자치단체 → 모든 행정기관)

○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

-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변화에 따라 전산직 위주의 교육에서 행정직 등도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
- 자치단체의 부족한 교육시설 해소와 개발원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

○ 출연금(분담금) 부담 완화 및 인상률 최소화

- 개발원 설립·운영자금의 일시출연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분담금 제도를 당분간 유지
- 개발원의 업무확대에 따른 운영재원 증가분은 수익구조 개선으로 자체 충당하고 시·도 분담금 인상은 물가상승률 반영수준으로 최소화

(3) 조직의 경쟁력 강화

○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설계

- 조직구조는 원장→상임이사→실·본부장→팀장체제로 설계
-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발원의 비전에 부응하는 최적의 조직 개편(안) 마련

※ 개발원 성장전략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 : '07. 4~6월(한국행정연구원)

○ 인사관리 제도 개선

- 벽 없는 조직구현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직렬 통합
- 개발직, 관리직 → 사업관리직으로 통합(연구직은 현행유지)
-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부직의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
- 적용대상 : 실·본부장, 단장 또는 센터장
- 팀장급 직위에 대한 내부경쟁체제 도입
- 파견공무원 또는 고유직원 중 능력이 우수한자를 팀장으로 보임
- 팀장의 보직과 해당직급의 정원을 분리하여 운영(직위수당 지급)

○ 선제적 행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추진

- 미래 대응 및 창조적 사업발굴을 위한 혁신전략팀 구성·운영
- 사업추진 단계별 위험요소에 대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해 정보화사업 심사·평가기능 강화

(4) 능력과 성과중심의 경영관리체계 도입

○ 기관 경영평가제 도입

- 과업목표 설정에 의한 책임경영제 확립
- 업무성과의 인사관리 연계

○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처우수준 개선

- 기관장 및 직원 보수수준을 유사기관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

※ 현재 유사기관 보수평균 단순 비교시 76% 수준

- 기본급 인상보다는 성과급 지급을 확대

5] 설립절차 및 일정

※ 개발원 설립 일정은 시·도 의회의 「조합 해산 동의절차 완료」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추후 재조정 예정

(1) 설립준비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위원회 구성

- 구성일시 : '07. 1. 30
- 구성인원 : 8명(행자부 2, 시·도 4, 조합 2)

※ 제22회 조합회의(임사회, '07.5.3)에서 시·도 위원 2명 추가할 것을 결의

○ 주요역할

-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(안) 수립
- 개발원 정관(안) 및 필수 규정(안), 개발원 예산(안) 등 작성
- 개발원 설립에 따른 제반절차 및 주요사안 협의·조정

○ 운영계획

- 운영기간 : '07. 2월 ~ 개발원 개원 시까지
- 주요일정
 - '07. 2월 : 준비위원 위촉동의
 - '07. 6월 :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(안) 등 협의
 - '07. 7~9월 : 개발원 정관(안) 작성 및 설립관련 제반절차 이행
 - '07. 10월 : 설립발기인 창립총회 개최
 - '07. 10월 : 이사회 개최 및 개원식 준비(준비위 해산)

(2) 설립발기인 구성

- 시 기 : '07. 9월
- 구성인원 : 17명(행정자치부장관,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장)
- 주요역할 : 개발원 정관확정 및 기명날인, 창립총회 개최 등

※ 정관(안)은 개발원 설립준비위에서 작성 후 시·도에 송부예정

(3) 창립총회 개최

- 시 기 : '07. 10월
- 참석대상 : 개발원 설립발기인 또는 의결권 위임자
- 주요내용
 - 개발원 정관 및 설립취지문 채택
 - 이사장 및 임원(원장, 이사, 감사 등) 선출
 - '0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

(4) 개발원 설립허가

- 시 기 : '07. 10월(창립총회 개최 후)
- 허가관청 : 행정자치부

※ 민법 제32조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4조제3항 13호에 규정된 사항임

- 신청서류
 - 설립허가 신청서, 발기인 인적사항, 정관,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
 - 사업계획 및 예산서, 임원예정자 인적사항 및 승낙서, 창립총회 회의록 등

(5) 개발원 설립등기

- 시 기 : '07. 10월(설립허가 일부터 3주 이내)
- 등기사항 : 목적, 명칭, 사무소, 설립허가일, 이사, 자산총액 등
- 구비서류 : 정관 이사 자격증명, 설립허가서, 재산목록, 대표이사 인감 등

(6) 이사회 개최

- 시 기 : '07. 10월
- 상정안건 : 개발원 운영을 위한 필수규정(안) 등

6] 조치사항

(1) 개발원 필수 규정 제정

- 개발원 설립 및 기관운영의 기본골격이 되는 주요규정을 우선 제정
 - 이사회 운영, 조직, 인사, 회계, 보수 등 관련규정
- 준비위 검토 및 시·도 의견조회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

(2) '07년도 개발원 예산(안) 수립

- '07년도 조합 예산을 기초로 하되, 조합의 청산결과 재산·부채의 이관 및 개발원 설립 시 출연금 규모 등을 확정하여 개발원 예산(안)을 새로이 편성

(3) 개발원 CI(Corporate Identity) 설계

-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개발원의 비전과 도약을 상징할 수 있는 혁신적 CI 설계(개발원 旗 및 관인 등 제작)

(4) 개발원 조직설계

- 『개발원 성장전략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』을 통해 업무별, 기능별 조직진단 실시
 - 기 간 : '07. 4 ~ 6월
 - 주요내용
 -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비전, 목표 및 전략 수립
 - 개발원의 안정적이고 발전적 성장모델 제시
 - 조합 조직진단을 통한 개발원의 혁신적인 조직설계
 - 개발원의 기능별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식 제시
-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내부 토론 및 준비위 검토 등을 거쳐 최 적의 조직·정원 개편(안) 마련

IV 협조사항

(1) 개발원설립 준비위원회 운영 협조(해당기관)

- 주요안건 검토를 위한 정기·수시회의 참석
- 각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신속한 결정 등 요망

(2) 시도 의회 동의절차 이행 협조(각 시·도)

- 개발원 설립을 위한 조합 해산(안)의 신속한 의결 및 가결을 위한 협조요망
- 시·도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및 설득

(3) 정관(안) 등 주요안건 협의 시 적극적 협조

- 개발원 정관(안) 등 주요안건 협의 시 지정기일 내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협조 요망

【붙임 #1】

자치정보화조합의 현황

□ 설립 일 : 2003. 2. 24

-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법 제50조에 의해 설립

※ '98 ~ 조합 설립 전까지 『자치정보화지원재단』으로 운영

□ 조 직

- 기구 : 1실 1본부 1단 1센터 10팀
- 인력 : 102명(고유직원 81, 파견공무원 21)

□ 재정규모('07년 예산 기준)

- 총 33,507백만원
 - 경상예산 4,774백만원, 사업예산 28,304백만원, 반환금 429백만원
- 재원 별
 - 국고보조금 2,389백만원, 분담금 1,766백만원, 위탁사업 25,860백만원, 자체수입 3,462백만원

□ 주요기능

-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·조정 지원
- 자치단체간 공동활용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
-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임·위탁사무 처리
-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컨설팅
- 정보화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·훈련
- 중앙↔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연계 협력

【붙임 #2】

조합 및 개발원 대비표

□ 유사한 점

- 설립목적 :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사업 공동추진
- 기 능
 - 전자지방정부 구현사업, 지역정보화 촉진사업, 정보화사업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조정, 지역정보화 관련 위탁사무
 - 조사·연구 및 컨설팅, 정보화 교육·훈련 등
- 직원구성 : 고유직원 및 공무원(시·도, 행자부)
- 운영재원 : 자치단체(출연금, 분담금), 국비지원금, 기타사업수익

□ 차이 점

구 분	한국지역정보개발원	자치정보화조합
설립근거	특별법상 특수법인 (전자정부법 제50조)	특별법상 특수법인 (전자정부법 제50조) 지방자치단체 조합 (지방자치법 제159조)
법적지위 (기관기능)	전자정부법 및 시행령	자치정보화조합 규약
의사결정	이사회 (시·도 행자부 원장 상임이사 외부인사)	조합회의 (15개 시도)
기관운영	민법 적용(재단법인)	지방자치법 적용
구 성 원	16개 시·도 + 행정자치부	15개 시·도
업무범위	자치단체 공동사무 중앙행정기관 위탁사무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	자치단체 공동사무 행정자치부 위탁사무

【붙임 #3】

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 절차

□ 조합 해산절차

해 산 절 차		주 요 내 용
I	준비위원회 구성 운영	○ 기 간 : '07. 2 ~ 개발원 설립시까지 ○ 구 성 : 8명(행자부 2, 시·도 4, 조합 2) ○ 주요역할 -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수립 - 정관(안) 및 필수규정(안), 개발원 예산(안) 등 작성 - 개발원 설립에 따른 제반절차 및 주요사안 협의·조정
II	기본계획 수립	○ 준비위 검토, 행자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 보고(3~6월)
III	조합회의	○ 시 기 : '07. 6월 ○ 주요안건 : 조합 해산결의, 청산인 선임, 기본계획 등
IV	시도의회 동의	○ 시 기 : '07. 7 ~ 9월 ○ 상정안건 : 조합 해산 동의(안)
V	시도의원 및 정보화 책임관 워크숍(잠정)	○ 시 기 : '07. 7 ~ 8월 ○ 주요내용 - 개발원 전환설립의 필요성 및 현안사항 보고 - 지역정보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개발원의 발전방안 토론 등
VI	재산·부채실사	○ 시 기 : '07. 9월(청산기준일 '07. 8. 31예정) ○ 주요내용 - 조합이 취득한 유·무형재산 및 채권·채무 조사 - 재산 채권·채무 등에 대한 이관조서 작성 후 청산인에게 제출
VII	조합해산 최종회의	○ 시 기 : '07. 10월 ○ 상정안건 - 개발원으로 이관될 재산·시설·사업및 그에 대한 권·의무의 확정
VIII	조합해산 승인	○ 신청기관/시기 : 행정자치부 / '07. 10월 ○ 신청서류 - 조합 해산 시도의회 동의서
IX	조합 해산등기	○ 시 기 : '07. 10월(개발원 설립이후) ○ 신청서류 - 조합 해산 시도의회 동의서 및 행자부장관 승인서

※ 관련근거 : 지방자치법 제164조, 자치정보화조합 규약 제18조

□ 개발원 설립절차

설립절차		주요내용
I	준비위원회 구성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간 : '07. 2 ~ 개발원 설립시까지 ○ 구성 : 8명(행자부 2, 시·도 4, 조합 2) ○ 주요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수립 - 정관(안) 및 필수규정(안), 개발원 예산(안) 등 작성 - 개발원 설립에 따른 제반절차 및 주요사안 협의·조정
II	기본계획 수립	○ 준비위 검토, 시도 및 행자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 보고(6월)
III	정관(안)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기 : '07. 7 ~ 8월 ○ 준비위 검토, 행자부 협의, 시도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(안) 확정 후 시도에 송부(자치단체장 기명날인)
IV	설립발기인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기 : '07. 9월 ○ 발기인 : 행자부장관,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장
V	창립총회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/시기 : 개발원설립 발기인 / '07. 10월 ○ 상정안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관 및 설립취지문 채택 - 이사장 및 임원선출 -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
VI	설립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무관청/시기 : 행정자치부 / '07. 10월 ○ 신청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립허가신청서, 설립발기인 성명/주소/약력, 정관,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, 사업계획 및 예산서,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과 취임 승락서, 창립총회 회의록
VII	설립등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기 : '07. 10월(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) ○ 등기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, 명칭, 사무소, 설립허가일, 자산총액, 이사 인적사항 ○ 첨부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설립허가서, 정관, 이사자격 증명서류, 재산목록 법인대표자 인감
VIII	이사회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최시기 : '07. 10월 ○ 상정안건 : 개발원 운영을 위한 필수 규정(안) 등

※ 관련근거 : 민법 제3장(법인)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